#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680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3년 7월 7일

발 의 자 : 정 혜 영 의원

## 1. 개정이유

「하남시 문화행사의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문화행사의 정의에 출자·출연기관 추가 규정(안 제2조제1호)

나. 적용대상에 출자·출연기관 관련 단서 규정 신설(안 제3조제1항)

다.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3. 7. 7. ~ 7. 13.

○ 의견 내용 : 해당사항 없음

바. 부서협의 결과(문화정책과)

⇒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의회 조례 제 호

#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문화행사 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포함)가”를 “포함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남시가 추진하여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행사에”를 “문화행사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출자·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및 「하남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하되”를 “하되, 한 차례만”로 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제5조 제3항”을 “제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1. “문화행사”라 함은 하남시(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 포함)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,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.<br>2. (생 략) | 제2조(정의) ----------.<br>1. ---------- 포함)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----------.<br>2. (현행과 같음) |
| 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조례는 하남시가 추진하여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 <단서 신설><br>1. ~ 3. (생 략)<br>②·③ (생 략) | 제3조(적용대상) ① ------ 다음 ---------- 문화행사에 --------. 다만, 출자·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및 「하남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한다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 | 제6조(임기) ---------- 하되, 한 차례만 ------- |

| | |
|---|---|
| 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| ----------. ----------. |
| 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| 제11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.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| 3.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| 3. 제5조제3항---------- |
| 4. (생 략) | 4. (현행과 같음) |

# 관계법령 발췌서

**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**

**제25조(지도·감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
2.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**「하남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**제16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
2. 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제14조에 따라 시가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

나. 제15조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

다.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

라.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

마. 출자·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

3. 그 밖에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